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김희정·서일준·이종배

박준태 · 김태호 · 이인선

임이자 • 곽규택 • 구자근

박정하 · 안상훈 · 송언석

김예지 • 이성권 • 정성국

조은희 • 이만희 • 한지아

조지연 · 이헌승 · 서명옥

정연욱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함께 입법부의 독립·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제9호 중 "제146조를"을 "제146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 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는 발언하였을 때

제16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90일"을 "90일, 제155조제9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180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2분의 1을"을 "3분의 2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제155조(징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	
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제146조를</u> 위반하여 본회의	9. <u>제146조제1항을</u>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	
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신 설>

- 10. ~ 16. (생략)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저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생략)

② ~ ⑤ (생 략)

9의2. 제1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명
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
언을 하였을 때
10. ~ 16. (현행과 같음)
∥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u>.</u>
1.•2. (현행과 같음)
3
90일, 제155
조제9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18
0일
3분의 2를
4. (현행과 같음)
. (CO EU/

② ~ ⑤ (현행과 같음)